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기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07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4. 23.

발의자 : 김기표 · 신영대 · 문진석

위성곤 · 이인영 · 조계원

이학영 · 강득구 · 이재강

윤준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이유

현행법에 의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 전 1년 이내 혹은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가액이 12억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감면하고 있음.

2023년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인 합계출산율은 0.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중 최저치를 기록함.

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이 핵심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음. OECD도 2025년 3월 ‘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: 저출산 추세의 이해’(Korea’s Unborn Future: Understanding Low Fertility Trends)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고 주거비 부담을 저출산 원인으로 지적함. 실제,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% 상승하면,

이듬해 출산율은 0.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.

이에 출산·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 일몰기
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
함(안 제36조의5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